

# 거주/숙소제공 확인서

Nationality

○ 국 적 : \_\_\_\_\_

Your Name

○ 성 명 : \_\_\_\_\_

○ 외국인등록번호 : \_\_\_\_\_

Residential Address

○ 체 류 지 : \_\_\_\_\_ 도 \_\_\_\_\_ 시(군)  
\_\_\_\_\_  
\_\_\_\_\_

Alien Registration Number

위 외국인은 본인(회사)이 소유(임대)하고 있는  
[ ]기숙사 [ ]임대숙소 [ ]임대주택 [ ]기타(\_\_\_\_\_)에  
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.

※ 회사소유가 아닌 개인 임대주택(아파트)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입증  
서류 첨부

Date

[ ] Dorm [ ] Rental Accommodation [ ] Rental House [ ] Others

\_\_\_\_년 \_\_\_\_월 \_\_\_\_일

## 확 인 자

소 속 : \_\_\_\_\_ 직책 : \_\_\_\_\_

Contact Number

전 화 번 호 : \_\_\_\_\_

Relation with you:  
[ ] Employer [ ] Relative [ ] Others

위 외국인과의 관계 : [ ] 고용주 [ ] 친척 [ ] 기타(\_\_\_\_\_)

성 명 : \_\_\_\_\_ (인/서명)

출입국관리사무소장(출장소장) 귀하

### <알림>

법무부는 2013.10.10일부터 국내 체류외국인의 체류지 정확성을 제고하고자 체류기간 연장 및 체류자격 변경신청 시 체류지 입증서류(임대차계약서, 숙소제공 확인서,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 우편물, 공공요금 납부영수증, 기숙사비 영수증 등) 제출을 의무화 하였으니 제출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체류지 입증서류는 법령에 따라 징구하는 서류로 미제출 시 체류허가 불허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, 허위 체류지 입증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 등을 받을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Verifying Person's Name and Signature